



제424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외국 금융투자업자 등록 특례 신설 및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허용〉
■ 김현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023호)

2025. 4.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가. 외국 금융투자업자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등록 특례 신설	3
나.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허용	9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현정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2. 10.
3. 회 부 일 : 2025. 2.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사실상 동일 영업을 유지하면서 조직형태만을 변경하는 경우 신규 인가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으나 등록 특례는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신규등록과 동일한 요건 및 절차가 적용되어 심사가 장기간 소요되고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음.

한편, 해외주식의 소수단위 거래의 경우 증권사가 소수단위 주문을 합산한 후 부족분을 채워 1주 단위의 완전한 주식인 온주(穩株, Complete Share)로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예탁결제원의 주식 예탁업무는 온주를 기본단위로 하여 예탁자의 자기소유분과 투자자 예탁분을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예탁자 계좌부에 해외주식의 분할기재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한시적으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통해 해외주식의 소수단위 거래 시 구분예탁의무의 예외를 적용하여 해결하고 있음.

이에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등록에 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고, 해외주식의 소수단위 거래 시 규제샌드박스 내용인 구분예탁 규제의 예외

를 현행법에 규정함으로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 21조의2 신설 및 제309조제3항).

Ⅲ. 검토의견

가. 외국 금융투자업자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등록 특례 신설

- 개정안은 금융투자업등록 등을 한 외국 금융투자업자 또는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국내법인이 조직형태 변경을 통하여 금융투자업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영업을 양수하는 자가 각각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등록요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춘 것으로 보도록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21조의2(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등록에 관한 특례) 제1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 제117조의4에 따른 등록 또는 제249조의3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한 외국 금융투자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국내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형태 변경을 통하여 금융투자업 전부(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영업을 양수하는 자가 각각 제18조, 제117조의4 또는 제249조의3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제18조제2항제3호·제5호, 제117조의4제2항제3호·제4호·제6호 또는 제249조의3제2

현행	개정안
	<u>항제3호·제5호의 요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춘 것으로 본다.</u>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은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제18조¹⁾)과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제249조의3²⁾)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 시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제117조의4³⁾).

○ 구체적으로,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법 제18조⁴⁾, 시행령 제21조⁵⁾)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 ①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이하 “등록업무 단위”라 한다)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에 하나의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1.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
2. 금융투자상품등의 범위(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을 말한다)
3. 투자자의 유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의 등록) 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4(등록) 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경우 제12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 ②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단서 생략)
 - 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 나. 외국 투자자문업자로서 투자자문업의 수행에 필요한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설치한 자
 - 다. 외국 투자일임업자로서 투자일임업의 수행에 필요한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설치한 자
2. 등록업무 단위별로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춘 것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투자권유자문인력(제286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투자권유자문인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투자운용인력(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투자운용인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갖춘 것. 이 경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규정된 자가 해당 국가에서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에 상응하는 자를 다음 각 목의 수 이상 확보하고 있는 때에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가. 투자자문업의 경우에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 갖춘 것

과 일반 사모집합투자업(법 제249조의36), 시행령 제271조의27)의

- 나. 투자일임업의 경우에는 투자운용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 갖출 것
4.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5. 대주주나 외국 투자자문업자 또는 외국 투자일임업자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 가. 제1호가목의 경우 대주주(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 나.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나목·다목의 경우 외국 투자자문업자 또는 외국 투자일임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 5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6.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1조(등록의 요건 등) ③** 법 제18조제2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상근 임직원 1인을 말한다. (단서 생략)
- ④ 법 제18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상근 임직원 2인을 말한다.
- ⑥ 법 제18조제2항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별표 2 제4호가목·라목 및 마목에 따른 요건. 이 경우 같은 호 가목 중 “인가”는 “등록”으로, “인가 받으려는”은 “등록하려는”으로 보며, 같은 호 라목 중 “3년”은 “2년”으로 본다.
2. 최근 5년간 법 제20조의2에 따른 투자자문업(투자자문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투자일임업(투자일임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등록이 직권말소된 사실이 없을 것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임원 또는 대주주가 아닐 것
-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249조의3(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의 등록)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 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 나. 외국 집합투자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집합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외국에서 영위하고 있는 영업에 상당하는 집합투자업 수행에 필요한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설치한 자
2.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투자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려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4.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5. 대주주나 외국 집합투자업자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 가. 제1호가목의 경우 대주주(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 나. 제1호나목의 경우 외국 집합투자업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6. 경영건전성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법령 위반사실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7.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71조의2(등록의 요건 등) ③** 법 제249조의3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억원을 말한다.
- ④ 법 제249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1. 상근 임직원인 투자운용인력을 3명 이상 갖출 것
2. 다음 각 목의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모두 갖출 것

등록을 하려는 자는 ① 법인격, ② 최소자기자본, ③ 인적·물적 설비 구축, ④ 임원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요건 부합, ⑤ 대주주의 출자능력·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신용, ⑥ 경영건전성기준 등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⑦ 이해상충방지체계 구축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법 제117조의48), 시행령 제118조의49)의 경

- 가.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전산설비와 통신수단
 나. 사무실 등 충분한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다.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설비
 라. 정전·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완설비
- ⑤ 대주주(법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1. 대주주가 별표 2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라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같은 표 제1호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갖추는 것
 2. 대주주가 별표 2 제4호 또는 제5호라목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같은 표 제4호가목·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갖추는 것. 이 경우 같은 호 가목 중 “인가신청일”은 “등록신청일”로, “인가받으려는”은 “등록하려는”으로 본다.
 3. 대주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닐 것

가. 최근 5년간 법 제20조의2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이 직권말소된 자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의 임원 또는 대주주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완화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다른 회사와 합병·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
- ⑦ 법 제249조의3제2항제6호에서 “경영건전성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란 제16조제8항제1호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 ⑧ 법 제249조의3제2항제6호에서 “법령 위반사실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사회적 신용”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
 2. 제16조제8항제2호의 요건
- ⑨ 법 제249조의3제2항제7호에 따른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법 제44조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갖추는 것
 2.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의 교류를 차단할 수 있는 적절한 체계를 갖추는 것
-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117조의4(등록)**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나. 외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에 필요한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설치한 자
 2.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는 것

우 사업계획의 타당성·건전성 요건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음.

□ 한편, 국내에 진입한 외국계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조직형태를 변경¹⁰⁾

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 경우 영업실질에 변화가 없음에도 신규등록과

동일한 요건·절차가 적용됨에 따라 심사기간이 장기화되고 행정력이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투자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추 것

5.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6. 대주주(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한다)나 외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 것

7. 경영건전성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법령 위반사실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사회적 신용을 갖추 것

8.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 것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의4(등록요건) ① 법 제117조의4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117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위험관리와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2. 투자자 보호에 적절한 업무방법을 갖추 것

3.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을 것

③ 법 제117조의4제2항제4호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에 관한 전문성과 건전성을 갖춘 인력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적절하게 갖추 것

2. 다음 각 목의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갖추 것

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을 하기에 필요한 전산설비와 통신수단

나. 사무실 등 충분한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다.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설비

라. 정전·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완설비

④ 대주주[법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장(제118조의16제1항제2호라목 및 제118조의18제3항제1호·제2호는 제외한다)에서 같다]는 별표 2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표 제4호가목 중 “인가신청일”은 “등록신청일”로, “인가 받으려는”은 “등록하려는”으로 본다. (본문 단서 및 각 호 생략)

⑤ 법 제117조의4제2항제7호에서 “경영건전성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법령 위반사실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사회적 신용”이란 제16조제8항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⑥ 법 제117조의4제2항제8호에 따른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이하 이 장에서 “이해상충방지체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법 제44조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갖추 것

2.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의 교류를 차단할 수 있는 적절한 체계를 갖추 것

10) 국내지점을 국내법인으로 변경하거나 국내법인을 국내지점으로 변경하는 사례, 외국 금융그룹 내 한국지점의 모법인을 변경하는 사례(예: 싱가포르 법인→홍콩 법인) 등

낭비되는 문제가 있음.

- 참고로, 인가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문제가 있었으나, 2021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하여 외국 금융투자업자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인가의 경우 인가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춘 것으로 보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음.¹¹⁾

□ 개정안은 외국 금융투자업자 또는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국내법인이 조직형태 변경을 통하여 금융투자업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영업을 양수하는 자가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 등록 요건 중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과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의 경우 인력·물적설비(제18조제2항제3호, 제249조제2항제3호) 및 대주주 요건(제18조제2항제5호, 제249조제2항제5호)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의 경우 사업계획 타당성(제117조의4제2항제3호)과 인력·물적설비(제117조의4제2항제4호) 및 대주주 요건(제117조의4제2항제6호)에 대한 심사를 면제·완화하여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 변경 등록이 아닌 단순 조직형태의 변경으로서 기존 영업의 동일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인가에 관한 특례) 제12조제2항제1호 각 목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외국 금융투자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국내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형태 변경을 통하여 금융투자업 전부(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영업을 양수하는 자가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제2항제3호·제4호 및 제6호의 요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춘 것으로 본다.

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등록 심사과정의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외국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본국 사실조회 기간 등 소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임.

나.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허용

□ 개정안은 해외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외화증권이 분할되어 거래되는 경우에는 예탁자의 자기소유분과 투자자 예탁분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예탁자계좌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9조제3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9조(예탁결제원에의 예탁 등) ①. ② (생략) ③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예탁자계좌부를 작성·비치하되, 예탁자의 자기소유분과 투자자 예탁분이 구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309조(예탁결제원에의 예탁 등)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다만, 해외 증권시장(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을 말한다)에서 거래되는 외화증권이 분할되어 거래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탁자의 자기소유분과 투자자 예탁분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예탁자계좌부를 작성할 수 있다.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 증권예탁제도는 증권을 예탁기관(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증권의 이전을 실물증권의 이동 없이 계좌 간 대체기재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제도임.¹²⁾

- 현행 「자본시장법」 제61조¹³⁾ 및 제75조¹⁴⁾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하여금 자신이 소유하거나 투자자가 소유한 증권을 보관하는 경우 해당 증권을 예탁결제원에 지체 없이 예탁하도록 하고 있는데, 해외주식은 제308조¹⁵⁾에 따른 예탁제도 적용 제외증권(전자등록된 증권)이 아니므로 이 법에 따른 예탁의무가 발생함.

12)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예탁결제제도』, 2018. p.65.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1조(소유증권의 예탁) ①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고유재산을 운용함에 따라 소유하게 되는 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예탁결제원에 지체 없이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성, 다른 법령에 따른 유통 방법이 있는지 여부, 예탁의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에 예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금융투자업자가 제1항 본문에 따라 외화증권(「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8호의 외화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예탁결제원에 예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탁하여야 한다.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5조(투자자 예탁증권의 예탁)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따라 보관하게 되는 투자자 소유의 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예탁결제원에 지체 없이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성, 다른 법령에 따른 유통 방법이 있는지 여부, 예탁의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에 예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제1항 본문에 따라 외화증권을 예탁결제원에 예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탁하여야 한다.

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8조(예탁대상증권등) ① 이 절은 증권등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그 증권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이와 함께 현행법 제309조¹⁶⁾는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증권을 예탁결제원에 예탁하는 증권사로 하여금 투자자 및 예탁증권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투자자계좌부를 작성·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탁결제원은 증권사 및 예탁증권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예탁자계좌부를 작성·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투자자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자는 각각 그 증권을 점유한 것으로 보아 계좌부 기재에 대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으며, 증권의 이전은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에 계좌 간 대체의 기재를 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⁷⁾

□ 한편, 주식은 사원의 지위를 나타내는 최소출자 단위로서, 주주와 회사 간 법률관계의 안정을 위하여 1주 미만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주식불가분의 원칙’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음.

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예탁결제원에의 예탁 등) ① 예탁결제원에 증권등을 예탁하고자 하는 자는 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좌를 개설한 자(이하 “예탁자”라 한다)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증권등과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증권등을 투자자의 동의를 얻어 예탁결제원에 예탁할 수 있다.

③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예탁자계좌부를 작성·비치하되, 예탁자의 자기소유분과 투자자 예탁분이 구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예탁자의 명칭 및 주소

2. 예탁받은 증권등(이하 “예탁증권등”이라 한다)의 종류 및 수와 그 발행인의 명칭

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예탁결제원은 예탁증권등을 종류·종목별로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⑤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가 증권등을 인수 또는 청약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새로 증권등의 발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증권등의 발행인은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들을 갈음하여 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그 증권등을 발행할 수 있다.

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1조(계좌부 기재의 효력) ②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에 증권등의 양도를 목적으로 계좌 간 대체의 기재를 하거나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질물(質物)인 뜻과 질권자를 기재한 경우에는 증권등의 교부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 이처럼 온주를 전제로 한 현행 법률체계와 매매·결제 인프라 내에서 소수단위 주식 거래는 증권사가 투자자들의 소수단위 주문을 합산하고 부족분은 자기계산으로 채워 온주로 만들어 거래하는 방식¹⁸⁾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 그런데, 현행법은 증권사의 자기소유분과 투자자 예탁분이 구분될 수 있도록 예탁자계좌부를 관리하도록 규정¹⁹⁾하고 있어 증권사의 자기소유분과 투자자 예탁분이 결합된 온주의 경우 투자자계좌부와 예탁계좌부 중 어느 쪽에도 기재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게 됨.

□ 이에 개정안은 해외주식 거래 시 예탁결제원의 예탁자계좌부에 예탁자의 자기소유분과 투자자 예탁분을 구분하도록 하는 의무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를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이처럼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가 허용될 경우 투자자는 종목당 최소투자금액이 낮아짐에 따라 고가주식에 대한 소액투자가 가능해지며, 이에 따른 주식투자 접근성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8) 예를 들면, 투자자 A 0.3주, B 0.3주 매수 주문시 증권사가 자기재산으로 0.4주를 채워 온주로 만든 후 호가 제출

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예탁결제원에의 예탁 등) ③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예탁자계좌부를 작성·비치하되, 예탁자의 자기소유분과 투자자 예탁분이 구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예탁자의 명칭 및 주소

2. 예탁받은 증권등(이하 “예탁증권등”이라 한다)의 종류 및 수와 그 발행인의 명칭

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표]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에 따른 계좌구조



(자료: 금융위원회, “국내외 소수단위 주식거래 허용방안”, 금융위원회, 2021.9.)

□ 참고로, 2017년 이후 미국과 영국의 일부 증권사가 소수단위 주식거래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우리나라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2019년도부터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를 운영 중임.

[표2]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운영 현황

(단위: 억\$)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월
연간 결제금액	16.6	20.4	35.3	-
보관금액(말잔)	4.5	9.1	22.4	23.1

주: 2025년말 기준 22개 증권사가 서비스 운영 중

(자료: 금융위원회)

문 의 처

02)6788-5111